
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업무지침

2019. 11. 5(화)



환경부

목 차

1. 법령개정 배경	00
2. 주요 개정내용 및 경과조치	00
3. 일회용기저귀 배출·처리 업무지침	00

1. 법령개정 배경

□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(5년새 1.4배 증가) 대비 처리시설 태부족

○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신속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
처리시설 확보 및 발생량 저감 절실

□ 일반폐기물*과 유사해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
제외하여,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

* 가정 발생 기저귀, 노인요양시설 기저귀 등

2. 주요 개정 내용 및 경과 조치

- (분류) 의료폐기물로 정하는 일회용기저귀의 종류를 다음으로 한정
 -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,
 - 혈액이 포함된 기저귀
 - 위 두가지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
- (처리)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(이하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”)는 개별 밀폐포장, 전용봉투 배출, 별도 보관장소 보관, 냉장차량 운반
- (시행일 및 경과조치) ‘19.10.29일자로 시행하되, 인허가, 계약갱신 등 현장 상황을 고려, 경과조치 기간(~’ 19.12.31)부여
 - 경과조치 기간에는 기저귀를 “의료폐기물” 로의 처리 허용,
 - 위탁처리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“의료폐기물” 로의 처리 허용

< 「폐기물관리법」 하위법령 세부 개정내용 >

		기 존	개 정
시행령	분류	혈액, 체액, 분비물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	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 사환자, 병원체보유자의 것,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
시행규칙	처리방법	<p>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(배출) 전용용기 배출 ·(보관) 보관일 15일(냉장보관시 30일) 이내, 별도 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 보관 등 ·(운반) 전용 냉장차량으로 운반 ·(처리) 전용소각장에서 처리 	<p>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(사업장 일반폐기물)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배출) <u>개별 밀폐포장하고, 전용봉투(고시)에 배출</u> · (보관) 보관일은 15일(냉장보관시 30일) 이내, 별도 보관장소,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 · (운반) <u>냉장차량</u>으로 운반 (기저귀만 별도로 운반) · (처리) <u>일반소각장</u>에서 처리
	業 허가요건	생략	<p>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가 기저귀를 운반하려는 경우 ‘냉장함을 적재한 차량’을 구비하여야함</p> <p>※ 일반폐기물 중 ‘기저귀’만을 취급하는 경우 냉장차량만 갖추면 되도록 단서 규정</p>

<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경과조치 규정 >

-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.
-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3. 일회용기저귀 배출·처리 업무 지침

1.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

- 관내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에 제도개선 사항 홍보·교육(11~12월 중)
 - 관할 업계(의료기관, 사업장생활계 수집·운반업체, 소각업체)가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의 배출·처리기준을 숙지·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 및 배포한 지침 안내, 홍보(공문, 집합교육, 지침 홈페이지 게재 등)
-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 파악 ⇨ 배출자신고 절차 수리(~12월)
 - 관내 의료기관에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” 포함 하루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하는 경우, 배출자 신고 대상임을 안내·공지
 -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 의료기관에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작성 안내

- 사업장생활계수집·운반업 신규·변경 인허가 수요 파악 ⇨ 허가 검토·승인(~12월)
 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하기 위한 신규 또는 변경 인허가 운반업체 (사업장생활계) 수요 파악 및 인허가 위한 시설·장비기준 안내
 - 사업장생활계 수집·운반업 신규·변경허가 검토 및 승인, 승인 내역 공표 (의료기관에 안내공문, 홈페이지 게재 등) 및 환경부 보고(별도 요청공문 발송예정)

- 사업장일반소각장 중 변경 인허가 수요 파악 ⇨ 허가 검토·승인(~12월)
 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소각하기 위해 변경 인허가(영업대상폐기물 추가, 폐섬유류 51-27-99) 희망 업체 수요 파악 및 변경허가 검토·승인
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계약 현황 파악·보고(12월~)
 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(의료기관) - 운반·처리업체 간 위탁계약 현황 월별 보고 요청(별도 요청공문 발송예정)

2. 관할 환경청

- 관내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에 제도개선 사항 홍보·교육(11~12월 중)
 - 관할 업계(종합병원, 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·소각업체)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배출·처리기준을 숙지·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 및 배포한 지침 안내, 홍보(공문, 집합교육, 지침 홈페이지 게재 등)

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에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” 제조 안내
 - 관내 전용용기 제조업체에 별도 변경등록 없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작이 가능함을 안내
 - 수집·운반업체에 전용봉투가 원활히 납품될 수 있도록 일회용기저귀 전용 봉투 제작 가능한 전용용기 업체 등을 환경부·관할지자체에 공유

3. 의료기관

[※ 세부사항은 지침 참고]

□ 경과조치 기간동안 제반 사항을 준비
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 방법 숙지·직원교육
- 전용봉투(수집·운반업체를 통해 구매) 및 별도의 보관장소 마련
 - 별도의 보관장소란,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장소 기준*을 준수하되 기존 일반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컨테이너가 있을 경우 구획을 구분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보관으로 인정
- *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·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, 지붕과 벽면을 갖춘 실내 이거나 컨테이너 등 구조물이어야 함
- (필요시)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, 적정 처리업체 신규 계약 체결

□ 경과조치 이후 또는 제반 사항 준비 이후부터 일회용기저귀 적정 분류 요청

4. 수집·운반업체

[※ 세부사항은 지침 참고]

□ 경과조치 기간동안 제반 사항을 준비

-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 또는 배출시설계 수집·운반업체, 신규 인허가자 일 경우, 별도의 냉장적재함 차량 1대이상, 별도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구비 후 신규 인허가(사업장생활계) 신청(→시·군·구)
- 기존 사업장생활계 수집·운반업체의 경우 냉장적재함 차량 1대 이상 구비 하여 변경 인허가(운반차량 증차) 신청(→시·군·구)
- 영업대상 폐기물은 ‘폐섬유류(51-27-99, 그 밖의 폐섬유류)’

□ 경과조치 이후 또는 제반 사항 준비 이후부터 의료기관과 적정계약 후 운반

5. 소각업체

[※ 세부사항은 지침 참고]

□ 경과조치 기간동안 제반 사항을 준비

- 기존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섬유류(51-27-99)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,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반입·처분 가능
- 의료기관 및 수집·운반업체와 적정 단가로 계약 체결 준비

□ 경과조치 이후 또는 제반 사항 준비 이후부터 의료기관과 적정계약 후 처리

4. 협조요청 사항

- (지자체·환경청) 지자체·환경청 합동 관할 시·군·구 집체교육 실시 요청
 - 일시 : ‘19.11.11(월)~15(금) 중
 - 장소 : 시·도 강당 또는 대회의실 (※ 환경청-시·도 협의사항)
 - 주관 : 환경청·지자체(시·도) 공동주관, 제도개선내용은 환경청에서 발표
(※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교육지원)
 - 교육 시 필수안내사항
 - 시·군·구 주도로 관할 의료기관, 처리업체 대상 제도개선 내용 집체·방문교육 실시 및 제도개선 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홍보 실시 요청
 - 행정사항 : 다음 사항을 11.18(월)까지 환경부로 보고 (시·도에서 취합, 보고)
 - 환경청·지자체 주관 시·군·구 집체교육(11.11~15 중) 결과보고
 - 시·군·구 주도 관할 이해관계자 교육계획(11~12월 중) 보고

□ (유관협회) 협회 지역본부 별 회원사 대상 집체교육 실시 요청

- 일시 : '19.11.18(월)~12.27(금) 중
- 주관 : 협회, 교육내용은 환경청·환경공단 지역본부에서 지원
(※ 교육지원 요청사항은 관할 환경공단 지역본부에 문의)
- 행정사항 : 다음 사항을 11.18(월)까지 환경부로 보고
 - 지역본부 별 회원사 집체·방문교육 계획 보고

□ (환경청·공단) 시·군·구 주관교육 및 협회 교육 시 교육지원 요청

- 관할 지역에서 집체교육 실시할 경우, 제도개선 발표 지원 등 적극 협조 요청

감사합니다